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

제출법인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⑦창업일 년 월 일	

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	⑧ 창업중소기업 [ ]	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[ ]	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[ ]
	⑨ 청년창업중소기업 [ ]	⑪ 창업벤처중소기업 [ ]	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[ ]
창업 지역	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[ ]	⑮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[ ]	
수입금액	⑯ 8,000만원 이하 [ ]	⑰ 8,000만원 초과 [ ]	
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
감면세액계산내용

기본 감면 (최저한세 적용)	⑱ 감면대상 산출세액		⑲ 감면비율	50%	[ ]
				75%	[ ]
				100%	[ ]
	⑳ 기본 감면세액(⑱ × ⑲)				
추가 감면 (최저한세 배제)	1. 공제요건 :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[ ]여 [ ]부 가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물류산업 : 10명 나. 그 밖의 업종 : 5명				
	2. 고용증가 인원 계산				
	㉑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㉒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	㉓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(㉑-㉒)	
	명	명		명	
	㉔ 감면대상 산출세액 (=⑱)		㉕ 감면비율 (=㉘)	㉖ 고용증가율 × 50/100 (㉓/㉒× 50/100)	%
				㉗ 한도율	50%(25%)
				㉘ 추가감면율 Min(㉖,㉗)	%
	㉙ 추가 감면세액(㉔ × ㉕)				
㉚ 총 감면세액(⑳+㉙)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1. ⑯,⑰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.
2.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"㉒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"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.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, 같은 조 제1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), 제6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)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